◉국가보훈처공고 제2022-272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29일

국가보훈처장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 및 간호수당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.5퍼센트(상이 7급 보상금은 9퍼센트)인상하고, 보상금 인상에 따라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도 연동하여 인상하며, 무공영예수당과 4·19혁명공로수당의 월지급액을 각각 4만원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,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
- 전자우편 : kjrooty@korea.kr
- 팩스 : (044) 202-5496

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(전화 044-202-542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